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44 호

2000 년 9 월 30 일 토 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3호(골재채취업등록영업정지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4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5호(담배소매업폐업공고) -----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6호(담배소매업지정공고) -----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8호(담배소매업폐업공고) -----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9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공고) ----- 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20호(2000년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공시송달공고) ----- 1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3호

골재채취업등록영업정지공고

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11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등록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행정처분 내역			처분이유
			구분	업종	처분기간	
공영산업개발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344-9	97-36	영업정지	골재선별. 파쇄업	영업정지1월 (2000.9.23- 2000.10.22)	국세3회이상 채납

2000. 9.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4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업등록 자진반납에 따라 등록말소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0. 9.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토공사업	서울 02-50	변청 (120111-0019358)	계봉토건(주)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2-7	자진반납	2000.9.23.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강원 10-19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강원 13-21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5호

담배소매업폐업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9.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업폐업신고 현황 】

구 분	폐업신고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 9. 19	04-가-2717	김 옥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410-9	맏돌순두부	
상동	2000. 9. 19	04-가-2400	이 형 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239-4	성육슈퍼	
상동	2000. 9. 19	04-가-1593	장 경 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89	초당순두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6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9.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구 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 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9.25	134	김 종 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89-1	팬더할인마트	
상동	2000.9.25	135	이 경 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1-5 (남동공단150블럭6롯데)	대부매점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8호

담배소매업폐업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업폐업신고 현황 】

구 분	폐업신고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 9. 26	05-112	심 의 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617-33 1층106호	영광슈퍼	
상동	2000. 9. 26	04-가-2848	김 영 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3-9 (남동공단147브릭1롯데)	기정식당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1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9.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0. 1.28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 신고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신설 되었고, 문화공보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코자 함.

3. 주요골자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2000. 1.28)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관련 4개 항목 수수료 신설 (안 제3조관련 별표1, 1.일반행정관계 (3)~(6))
- 공연법 개정('99. 2. 8)으로 공연자 등록관련 2개 항목, 공연장 관련 5개 항목 폐지 및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따른 2개 조항정비 (안 제3조관련 별표1, 2.문화공보관계)

- 출판사및인쇄소의 등록시 수수료 징수 폐지(2000. 7.19 인천시 지침)에 따른 2개 항목 폐지 (안 제3조관련 별표1, 2.문화공보관계)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99. 2. 8)으로 음반판매업자 등록관련 수수료 3개 항목 폐지 (안 제3조관련 별표1, 2.문화공보관계)
- 관광진흥법 개정('99. 2. 8)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및 기타유기장업 수수료 4개 항목 명칭변경 및 유기장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 폐지 (안 제3조관련 별표1, 2. 문화공보관계 (3))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2000년 10월 20일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종으로 작성)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 - 2242, 2241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시 : 2000. 9.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정이유

- 2000. 1.28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 신고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신설 되었고, 문화공보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2000. 1.28)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관련 4개 항목 수수료 신설 (안 제3조관련 별표1, 1.일반행정관계 (3)~(6))
- 공연법 개정('99. 2. 8)으로 공연자 등록관련 2개 항목, 공연장 관련 5개 항목 폐지 및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따른 2개 조항정비 (안 제3조관련 별표1, 2.문화공보관계)
- 출판사및인쇄소의 등록시 수수료 징수 폐지(2000. 7.19 인천시 지침)에 따른 2개 항목 폐지 (안 제3조관련 별표1, 2.문화공보관계)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99. 2. 8)으로 음반판매업자 등록관련 수수료 3개 항목 폐지 (안 제3조관련 별표1, 2.문화공보관계)
- 관광진흥법 개정('99. 2. 8)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및 기타유기장업 수수료 4개 항목 명칭변경 및 유기장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 폐지 (안 제3조관련 별표1, 2. 문화공보관계 (3))

□ 본 문 “별첨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공연법 제39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관광진흥법 제7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관련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제1호 일반행정관계, 제2호 문화공보관계, 제6호 공중위생관계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00원 계속3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1건	600원	
(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8,000원	
(4) 법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20,000원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1건	3,000원	
(6)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1건	6,000원	
(7)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업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3) 유기장업 영업허가			
- 컴퓨터 게임장업 신규	1건	30,000원	
- 컴퓨터 게임장업 변경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0원	
-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원	
-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6. 공중위생관계			
(1)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2,300원	
(2)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000원	
(3) 위생처리업 신규	1건	6,000원	
(4) 위생처리업 변경	1건	3,500원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세척제제조업 신규	1건	20,000원	
(6)	세척제제조업 변경	1건	10,000원	
(7)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규	1건	6,000원	
(8)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	1건	3,500원	
(9)	기타			
· 영업자 지위승계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및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1]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8000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수수료 조항 신설(2000.1.28)
<신 설>					(4) 법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2000원	"
<신 설>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1건	3000원	"
<신 설>					(6)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1건	6000원	"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7)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및 항목별 개정사유

현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2. 문화공보관계					(현행과 같음)			
(1) 공연자등록(변경등록)	1건	2,000원			<삭 제>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자등록 조항 삭제 ('99. 2. 8)
(2) 공연자등록증제교부	1건	300원			<삭 제>			"
(3) 공연장설치허가					<삭 제>			공연법 개정으로 설치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99. 2. 8)
- 공연장	1건	10,000원			(1) 공연장영업등록		1건	10000원
- 가설공연장	1건	3,000원			<삭 제>			공연법 개정으로 수수료조항 삭제 ('99. 2. 8)
- 임시공연장	1건	500원			<삭 제>			"
(4) 공연장건축허가(허가 사항변경허가 포함)					<삭 제>			공연법 개정으로 설치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99. 2. 8)
- 공연장	1건	5,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 가설공연장	1건	1,500원			<삭 제>			공연법 개정으로 수수료조항 삭제 ('99. 2. 8)
- 임시공연장	1건	150원			<삭 제>			"

신·구조문대비표 및 항목별 개정사유

현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신 설>					-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영업신고	1건	30,000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99. 2. 8)
<신 설>					-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1건	15,000원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공중위생관계					(현행과 같음)				
(1) 유기자업 영업허가					<삭 제>				관광진흥법 개정('99. 2. 8)에 따라 문화공보관계란에 삽입
- 컴퓨터게임장업 신규	1건	30,000원			<삭 제>				"
- 컴퓨터게임장업 변경	1건	15,000원			<삭 제>				"
-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1건	60,000원			<삭 제>				"
-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1건	30,000원			<삭 제>				"
- 기타 유기자업 신설	1건	30,000원			<삭 제>				"
- 기타 유기자업 변경	1건	15,000원			<삭 제>				"

신·구조문대비표 및 항목별 개정사유

현				개정안				개정사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5)	공연장설치허가증 제교부	1건	300원		<삭 제>				공연법 개정으로 수수료 조항 삭제 (’99. 2. 8)
(6)	출판사, 인쇄소 등록	1건	500원		<삭 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령 개정으로 수수료조항 없음(’99. 6. 8)
(7)	출판사, 인쇄소 등록 사항변경등록	1건	300원		<삭 제>				"
(8)	음반판매업자등록	1건	1,000원		<삭 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으로 음반판매업 등록 폐지(’99. 2. 8)
(9)	음반판매업자등록 사항변경등록	1건	500원		<삭 제>				"
(10)	음반판매업자 등록 증 제교부	1건	500원		<삭 제>				"
<신 설>					(3) 유기장업 영업허가				
<신 설>					- 컴퓨터게임장업 신규		1건	3000원	
<신 설>					- 컴퓨터게임장업 변경		1건	1500원	
<신 설>					- 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99. 2. 8)
<신 설>					-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1건	3000원	"

신 · 구조문대비표 및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2)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삭 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법정수수료로 변경됨('99. 2. 8)	
(3)	이 · 미용사 신규면허	1건	2,300		(1)	(현행과 같음)					
(4)	이 ·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000원		(2)	(현행과 같음)					
(5)	위생처리업 신규	1건	6,000원		(3)	(현행과 같음)					
(6)	위생처리업 변경	1건	3,500원		(4)	(현행과 같음)					
(7)	세척제 제조업 신규	1건	20,000원		(5)	(현행과 같음)					
(8)	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원		(6)	(현행과 같음)					
(9)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규	1건	6,000원		(7)	(현행과 같음)					
(10)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	1건	3,500원		(8)	(현행과 같음)					
(11)	기타				(9)	(현행과 같음)					
영업자 지위승계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고수료에 준한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20호

2000년교통유발부담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공고

성명 : 황화성의 15인

주소 : 별첨

서류의 명칭 : '2000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정기분) 납부고지서

서류의 내용 : 별첨

위 서류를 귀하에게 '2000.9.15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2000. 10. 6까지 남동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인천시중은행,농협, 전국우체국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0.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0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정기분)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단위 : 원)

연 번	과세 번호	물 건 지	납부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부과금액	비 고
1	167	구월1동1473 (9층 901호)	황화성	570310- 1144426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83 벽산(아)104/905	207,640	
2	326	간석1동413-3	양재성	550717- 1064026	인천 남동구 간석동413-3 대성빌딩 202호	242,600	
3	383	간석3동110-3	송춘봉	570814- 1148411	인천 남동구 간석동110-3	998,990	
4	414	간석3동179-6 지하2층외 4건	박흥규	670709- 1055210	인천 남동구 간석3동179-6	1,439,090	
5	442	간석3동51-6	조찬남	500105- 2542722	서울 강북구 미아3동 [※] 791-2545	706,500	
6	457	간석4동250-3 1층1호	유영희	590805- 1055213	인천 남동구 간석4동250-3	80,530	
7	519	간석4동229-2 지하1호외	(주)원흥 건설	120111- 0018409	인천시 남구 주안동143-4	377,500	
8	580	만수2동72-46, 73-8, 73-18	(주)만수 상사	120111- 0020800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73-18	390,050	
9	586	만수2동72-49,	문인기	380725- 11405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8 광장(아) 5/1002	877,100	
10	601	만수2동 6-43	(주)신한 주택건설	120111- 0020644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6-43	921,150	
11	821	논현동 111-183	조기복	560105- 1228816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228 대양빌라 18/202	64,840	
12	832	논현동447-1 (29BL 2LT)	김은례	611128- 2481317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1 201호	91,860	
13	890	고잔동 630	길성수	570717- 1140627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451 시대연수(아)104/704	94,140	
14	903	고잔동 630	방재원	650128- 1002012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1 시대연수(아)103/111	81,650	
15	940	만수3동 1114 (구상가)	김은희	690715- 2006512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4 햇빛마을벽산(아) 115/304	9,640	
16	955	간석3동 176-10	서경원	541123- 1148718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104/402	446,480	